

함현초등학교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함현초등학교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규정’이라 한다.</p> <p>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 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p> <p>제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증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6.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명칭) (현행과 같음)</p> <p>제2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근거) (현행과 같음)</p> <p>제4조(선도원칙) (현행과 같음)</p>

<p>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p> <p>제5조(설치)</p> <p>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p> <p>제6조(기능)</p> <p>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p>제7조(구성 및 직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기타위원 등) 라.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3.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p>제8조(임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 	<p>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p> <p>제5조(설치)</p> <p>(현행과 같음)</p> <p>제6조(기능)</p> <p>(현행과 같음)</p> <p>제7조(구성 및 직무)</p> <p>(현행과 같음)</p> <p>제8조(임기)</p> <p>(현행과 같음)</p>
---	--

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3.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회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6.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 징계 조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제9조(운영)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소집)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②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p>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p> <p>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p> <p>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5.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p>	<p>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p> <p>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는 서면으로 통지 한다.</p> <p>3. 위원회 개최 통지시 일시, 장소, 개최 이유를 포함하여 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한다.</p>
<p>제1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신설]</p> <p>①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안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선도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선도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안의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도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p>	
<p>제12조(비밀의 범위) [신설]</p> <p>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도 학생의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선도 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11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간사) (11조에서 13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12조에서 14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
제3장 학생의 선도	제3장 학생의 선도
제13조(징계 전까지 단계별 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고 (1단계)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2. 교실 안 지도 및 상담 (2단계)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는 2차 경고 및 학부모상담 안내를 실시한다. 3. 학부모 상담 (3단계) 담임교사의 지시 불이행 및 교실 안, 지도만으로 행동수정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내교 및 면담을 요청하여 상담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위급시 바로 학부모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4. 상담교사 상담 (4단계) 교실 내에서 수업 방해 및 교사의 지도 불응으로 수업의 진행이 어려워 교실 밖으로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 상담실로 이동시켜 상담교실 담당자가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해당 수업 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5.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5단계) 	제15조(징계 전까지 단계별 과정) (13조에서 15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

학부모 상담, 상담교사 상담 실시 후에도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담임교사나 생활관련부장의 판단으로 5단계 생략 후, 6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6. 징계 (6단계)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함현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14조(징계 전까지 단계별 대응)

1. 1단계 : 훈계 (구두주의 및 격리조치)

수업 시 문제행동을 할 경우 교사는 생활지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실 뒤에 나가서 서있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공부하기’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고 문제행동 원인에 대해 학생과 상담한다.

2. 2단계 : 재발방지 및 과제부과를 부과한다.

가. 학급 내 봉사활동 이행하기
나.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쓰고 부모님 확인 및 지도 내용 받아 오기

3. 3단계 :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을 실시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이 반복될 시 전화상담, 서면상담, 대면상담 중 선택하여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상담일지를 기록한다.

4. 4단계 : 담임교사의 지도와 학부모 상담으로도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함현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 징계를 받는다.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내 봉사

나. 특별교육 이수

제15조(징계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특별교육 이수

3.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제16조(징계 전까지 단계별 대응)

(14조에서 16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

제17조(징계의 종류)

(15조에서 17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종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6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 내 봉사

- 가. 하루 2시간 내외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라. 학교 내 봉사의 예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 정비
5)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반성문, 편지쓰기, 독서 치료 등)

2. 특별교육 이수

- 가. 관련 교육 기간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0일 (특별교육 이수시 30시간 이내)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Wee 센터, 대안 위탁교육기관 등)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마.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

제18조(선도의 방법)

(16조에서 18조로 변경)

- 1.....
.....
.....
.....

2. 특별교육 이수

- 가. 관련 교육 기간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30시간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사.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여건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판단하여 학부모의 동의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차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선도 및 징계처분

선도 및 징계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7조(선도사항)

학생선도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	내용	징계기준	
		교내봉사	특별교육
1	도박을 한 학생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5	경찰에 연행된 후 춘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8	교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범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1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학생	○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14	흡기를 휴대한 학생	○	○
15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16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고의적)	○	○
17	시험문제를 접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1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빼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1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20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21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2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3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24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25	징계 중 위 각 호를 제자 위반한 학생	○	
26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제18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제기)

제19조(선도사항)

(17조에서 19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

제20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18조에서 20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

제21조(이의제기)

<p>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20조(재심의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장은 제19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p>제21조(재심청구)</p> <p>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p> <p>제22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p>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p> <p>제23조(사안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p>(19조에서 21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p> <p>제22조(재심의 절차)</p> <p>(20조에서 22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p> <p>제23조(재심청구)</p> <p>(21조에서 23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p> <p>제24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p> <p>(22조에서 24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p> <p>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p> <p>제25조(사안설명)</p> <p>(23조에서 25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p>
--	---

<p>제24조(심의절차)</p> <p>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지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통보 	<p>제26조(심의절차)</p> <p>(24조에서 26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p>
<p>제25조(선도 내용의 통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학교장은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p>제27조(선도 내용의 통지)</p> <p>(25조에서 27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p>
<p>제26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p> <p>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p>	<p>제28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p> <p>(26조에서 28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p>

<p>제27조(결과 처리·열람)</p> <p>1. 학생생활교육지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p> <p>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p>	<p>제29조(결과 처리·열람)</p> <p>(27조에서 29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p>
제5장 규정의 개정	제5장 규정의 개정
<p>제28조(개정절차)</p> <p>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30조(개정절차)</p> <p>(28조에서 30조로 변경) (현행과 같음)</p>
부 칙	부 칙
<p>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변경)</p>